

# 報道資料



보험개발원

제공일자	2007년 6월 7일	
담당자	류건식 선임 연구위원	368-4237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101
※ 총 10 매		

※내일(2007. 6. 8(금)) 조간부터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보험연구소는 CEO Report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를 발간하면서 연구내용을 보도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 개선안, 합리성 크게 결여 ”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보험연구소(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이경희 선임연구위원)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도의 합리성, 정합성 측면에서 제시하기 위해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예금보험제 개선안을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예금보험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회사의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하다 ” 라고 주장하였다.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분석모형을 통하여 목표기금액을 추정하는 등 지나치게 금융업권간 통일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의 합리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험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은 은행중심의 획일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각 금융권별 특성이 적극 반영됨과 아울러 국제적 정합성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보험사에 고유한 보험리스크 등 보험회사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 적용을 통해, 목표기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험사 자산리스크 이외에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재보험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목표기금을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보험권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체로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을 감안, 적절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획일적인 목표기금 추정보다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정도 및 선진국의 목표기금액 설정사례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차등요율제는 적절한 차등지표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즉 보험사의 리스크를 차등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등화지표가 마련되고 보험회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연후에 차등요율제 도입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예금보험제도는 각 금융권별 고유한 특성은 충분히 감안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정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의 문제점

### 1. 분석모형의 적정성 측면

- 보험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분석모형\***을 통해 보험권의 목표기금을 추정한 개선안은 근본적으로 **분석모형 설정상의 오류가 존재함.**
- 분석모형 설정상의 오류 이외에도 **투입변수 추정 오류**마저 존재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됨.
- \* 분석모형: EDF(Expected Default Frequency) 및 CreditMetrics모형

### 분석모형의 설정 및 투입변수 추정 오류

분석모형 설정 오류	투입변수 추정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일적인 분석모형 적용</li> <li>· 보험사리스크 특성 배제 등</li>   <li>- 국제적 정합성 결여</li> <li>· 보험권, VaR모형 적용 전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생보사에 대해 타금융기관의 추가자료를 무리하게 적용</li> <li>- 객관적 근거없이 보험사의 투입변수 값이 은행보다 불리하게 적용</li> <li>- 분석가정의 신뢰성(객관성)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파산확률, 낮은 회수율, 높은 표준편차, 낮은 자유도 등</li> </ul> </li> </ul>

□ 즉 부도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채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점 등이 **분석상의 오류로 지적됨.**

- 또한 파산확률, 회수율 평균 및 표준편차, 예상손실률 등과 관련된 제

가정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결국 적절하지 못한 분석모형 설정과 더불어 객관성이 결여된 투입변수의 사용 등으로 분석모형의 적정성 문제를 초래, 보험권이 수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됨.

## 2. 목표기금의 적정성측면

- 선진국의 목표기금 규모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생명보험은 대체로 3,000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실정임.

OECD 회원국의 목표기금 비교(사전적립국가)

국가	시장 <sup>1</sup>	보호기금	적립 <sup>2</sup>	목표기금	산출/배분기준	요율 <sup>3</sup>
캐나다	8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 <sup>4</sup> Y <sup>4</sup>	요구 자본 수입보험료	1.33% 0.75%
일본	2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 <sup>6</sup> Y <sup>6</sup>	보험료와 준비금 고려	-
프랑스	4	생명보험	■	Y <sup>5</sup>	책임준비금	0.05%
한국	7	통합기금	■	-	보험료와 준비금의 평균	0.3%
노르웨이	26	손해보험 신용보험	■ ■	Y <sup>7</sup> Y <sup>7</sup>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1.0%

- 주: 1. 2005년 세계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 순위  
 2. 기금의 적립방식: ■ 사전적립, □ 일부 사전적립(최소자금)  
 3. 사전각출 비율 또는 사후각출 한도.  
 4. 사전적립형 최소기금 설정. 생명보험은 CAD 1억, 손해보험도 특별보험료 각출. 영국도 대기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분류에서 제외.  
 5. 목표기금은 EUR 2억7천만, 그 중 일부는 보험사 내부유보 형태로 적립.  
 6. 목표기금은 생명보험 JPY 4,000억, 손해보험 JPY 500억.  
 7. 직전년도 수입보험료와 당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 이처럼 보험권의 경우 목표기금이 3,000억원 이하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가 작아 초기에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 없기 때문임.
- 즉 프랑스 생명보험기금의 경우 약 **3,370억원(EUR 2억 7천만)**, 미국 뉴욕주 약 **1,860억원(USD 2억)** 수준의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프랑스는 적립기금의 일부를 보험사 내부에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담은 덜하다고 할 수 있음.
  - 사후각출방식의 캐나다 생명보험기금에서도 즉시 대응기금으로서 약 876억원(CAD 1억)의 최소기금을 보유하고 있음.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생명보험 약 3조원 (JPY 4,000억), 손해보험 약 3,800억원(JPY)을 목표기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시장규모를 고려할 필요 존재
- 이에 반해, 개선안은 현가기준으로 생보 **2조 9,016억원(목표기금을 2.046%)**, 손보 **6,065억원 (목표기금을 2.447%)**의 목표기금액을 산정함.
- 이와 같은 목표기금액은 외국의 3,000억원 수준과 비교시,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특히 우리나라보다 책임준비금 규모가 월등히 큰 일본의 목표기금액 4조원과 비교하는 경우(시장규모 감안시), 2조 9천억원의 목표기금액은 높게 책정됨.
  -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일본의 17.4%에 불과하지만 목표기

금규모는 95.2%로 추정됨

- 목표기금 규모가 책임준비금에 연동되어 결정(책임준비금×목표기금율)되므로, 책임준비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보험회사들의 부담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즉 개선안에서는 책임준비금 증가율을 7%로 가정하였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실제경험치는 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책임준비금 증가율 7% 가정시 : 생보 목표기금율 2.046%에의 도달연수는 12년, 목표기금액은 6조 5,330억원
    - 책임준비금 증가율 9% 가정시 : 생보 목표기금율 2.046%에의 도달연수는 21년, 목표기금액은 17조 2,948억원
  
- 실제 책임준비금 증가율 적용시 개선안보다 보험권이 적립해야 하는 목표기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목표기금액 적정성 측면에서 선진국과 많은 괴리가 존재함.

### 3. 차등요율제의 적정성측면

-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제를 동시 도입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인프라 및 리스크 평가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리한 일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차등요율제 도입문제는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회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OECD국가 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즉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적용국가 9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모두 차등요율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2005년말 현재 차등요율제를 도입한 29개국은 은행에 대해서만 차등요율제를 적용함.

**OECD국가 차등요율제 비교(은행권/보험권)**

	은행권	보험권
OECD (30개국)	28개국 (예금보험제 시행)	9개국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시행)
차등요율제	12개국	시행국가 없음

-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보험권에 차등요율제를 적용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차등요율제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차등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적정지표 선정 및 적정 차등화 등급 산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결국 차등요율제도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며, **보험권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인식이 우선되어야 함.**
  - 특히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미실시, EU 지급여력제도를 근간으로 계산

되는 지급여력비율은 차등화지표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존재

#### 4. 보상한도의 적정성 측면

- 개선안은 보험권 보상한도를 종전처럼 5,000만원으로 설정, 목표기금액 등을 추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보상수준은 해약환급금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 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로 기대하는 보험금으로는 부족한 수준임.
- 보험권의 경우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2,000만원으로 하는 경우, 생명보험은 전체계약자의 98.7%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보호대상금액의 84.3%까지 보장이 가능함.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2,000만원의 보상한도 수준은 전체 계약자의 99.2%가 보호받고 전체보호금액의 82.8%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현행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 인하가 필요함.

## 보험대상예금에 대한 예금자 및 금액구성비 비교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금자(%)	금액(%)	예금자(%)	금액(%)	예금자(%)	금액(%)
2,000만원 이하	96.6	24.2	98.7	84.3	99.2	82.8
3,000만원 이하	2.2	9.4	0.9	7.2	0.5	6.0
5,000만원 이하	0.6	5.7	0.2	3.6	0.2	4.3
5,000만원 초과	0.7	60.7	0.2	4.9	0.1	6.9

주: 은행은 2000년 6월말 기준, 보험권은 FY2004기준

- 미국, 캐나다 등의 보호기금은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낮추고 보험금기준은 높이는 이원적 보상체계를 운용함.
- 즉 보험금 기준으로는 30만달러(미국)와 20만달러(캐나다)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해약환급금 기준은 이 보다 낮은 10만달러(미국)와 6만달러(캐나다)로 설정함.
- 보상한도 이원화는 소액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면서 보험사고시 위험보장과 고액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의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전무함.
- 이와 같은 보상한도 조정과 목표기금액을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적정 보상한도를 고려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됨.